

대전지방법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102606-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	고	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 21.
			2015. 2.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가 2012. 7. 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2012. 7. 12. 접수 제707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¹⁾

1) 소장 청구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5. 8. 1. 삼환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삼환건설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삼환건설산업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8. 1.부터 2007. 8. 1.(이후 2012. 7. 27.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삼환건설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삼환건설산업이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C,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삼환건설산업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삼환건설산업은 2005. 8.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소관: 원동지점, 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으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1) 삼환건설산업이 2012. 6. 2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4. 삼환건설산업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148,050,234원(= 원금 144,000,000원 + 이자 4,050,234원)을 변제하였다.

1/2 지분'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당금으로 1,215,025원이 발생하였고, 추가보증료 459,930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B의 처분행위

B는 2012. 7.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7. 12. 접수 제70737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B는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 사업자금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삼환건설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이전인 2012. 7. 6. 체결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위 삼환건설산업은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2012. 9. 24.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여 그 개연성은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B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

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2. 7. 6.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1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51,393,100원 상당의 충북 옥천군 D 대 267㎡ 및 그 지상 건물, E 도로 155㎡ 중 1/5 지분이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약 149,725,189원(대위변제금 148,050,234원 + 채당금 1,215,025원 + 추가보증료 459,930원) 상당의 구상금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499,443,226원 상당의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위 2012. 7. 6.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합계액 649,189,415원(149,725,189원 + 499,443,226원)이 적극재산의 합계액 166,393,100원(115,000,000원 + 51,393,10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2. 7. 6.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 B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력 확보를 위한 신규자금 융통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라 제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편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판사 박예지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유성구 F, G에 있는 H건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

지1층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374.46m²

1층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390.08m²

2층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90.44m²

3층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90.44m²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자동차관련시설(경비실) 5.76m²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자동차관련시설(경비실) 15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3층 제321호

구 조 : 일반철골구조

면 적 : 60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전 유성구 F 대 24731m²

2. 대전 유성구 G 잡종지 6470m²

대지권의 종류 : 각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4731분의 206.45

2. 6470분의 64.7 끝.